

##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에 관한 연구

이 시 환\*

- 
- I. 서론
  - II. 중국에서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그 상호관계
  - III. 중국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
  - IV. 중국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제조물결함의 비교
  - V. 결론
- 

### I. 서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제조물책임법이 1960년대 중반에 판례법에 의해 확립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고 있다. 근래 중국에서도 제조물의 품질향상에 관심이 높아, 행정면에서는 제조물의 표준화, 품질관리, 검사 등 여러 제도가 창설됨과 동시에 법제면에서도 산품질량법(産品質量法; 이하 “제조물품질법”이라 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새로운 법률이 탄생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은 올해로 수교한지 15년에 지나지 않지만 그동안

---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교역액이 크게 늘어나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내수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들어 소비자 단체까지 출현해 개별적인 불만을 집결하면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up>1)</sup>

따라서 중국에서 발생하는 제조물사고로 인해 책임주체가 될 염려가 있는 우리나라 수출업자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으로서는 중국의 제조물 책임법제를 숙지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sup>2)</sup>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제조물 책임법규에 대한 연구는 개괄적인 연구에 그친 감이 있다.

그런데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제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 법률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비로소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요체이므로 제조물책임제도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핵심적인 개념이다.

여기서 이 논문은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 중에서 제조물결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수출업자나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1) 중앙일보 2007년 3월 27일자 참조.

2) 예컨대 허재창·한낙현의 “중국의 제조물책임관련법규와 사례연구”(무역상무연구, 한국 무역상무학회, 제25권, 2005)가 그것이다.

## II. 중국에서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그 상호관계

### 1.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

중국에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법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이하 “중국 민법통칙” 또는 경우에 따라 단순히 “민법통칙”이라 한다)은 평등주체인 공민(자연인)간·법인간·공민과 법인간의 재산관계와 신체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로서<sup>3)</sup> 모든 민사법률 규범 중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민법에 상당하고 제조물 책임에 관하여는 제122조<sup>4)</sup>에서 특수 불법행위의 한 형태로서 규정되고 있다.

#### (2)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이하 “중국 제조물품질법” 또는 경우에 따라 단순히 “제조물품질법”이라 한다)은 제조물의 품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조물의 품질수준 향상, 제조물의 품질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sup>5)</sup> 1993년에 제정하였고, 그 후 2000년 7월 8일자로 개정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sup>6)</sup> 이 법은 제조물책임에 대해서 민법통칙 제122조를 구체화하여, 제조업자·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어 실제로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이라 할 수 있다.

---

3) 중국 민법통칙 제2조 참조.

4) 중국 민법통칙 제122조는 “제조물품질의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제조업자와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운송인, 창고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와 판매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1조 참조.

6) 이 법의 입법배경에 대하여는 허재창·한낙현, 전계 논문, p. 246 참조.

### (3)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또는 경우에 따라 단순히 “소비자권익보호법”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sup>7)</sup>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조물품질법에 규정된 제조업자·판매자의 책임을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에서의 제조물책임에 이해하는데 있어 제조물품질법과 함께 중요하다. 이 법에 규정된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제18조(사업자의 인신 및 재산안전 보장의무); 이 조는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사용함에 있어 인신·재산 안전을 향유하고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중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에 규정된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할 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sup>8)</sup>

첫째,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재산안전의 요구에 부합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둘째,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는 진실을 설명하고 명확히 경고할 의무를 진다.

셋째,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상공행정관리부서·업계주관부서·기술감독부서 등을 포함한 유관 행정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적시에 유효한 각종 구제·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40조(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는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의 민사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9)</sup>

---

7)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조 참조.

8)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黃建中, 消費者權益保護法新釋與例解, 北京, 同心出版社, 2001, pp. 127~130 참조..

9)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3) 이 밖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제41조(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의 인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의 법률책임), 제42조(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기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의 법률책임), 그리고 제44조(사업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재산손해를 입힌 경우의 민사책임)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 2. 중국 제조물책임 관련법규들의 상호관계

### (1) 중국 제조물품질법과 중국 민법통칙의 관계

중국에서 제조물품질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민법통칙에 의거 제조업자, 판매자 및 소비자 사이에 제조물의 품질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였다. 제조물품질법은 민사법률관계에 관련되는 규정으로서 민법통칙의 기본원칙과 일반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이다.<sup>10)</sup>

그런데 중국 제조물품질법의 제2장, 제3장, 제5장은 공법에 속하고 제4장은 사법에 속한다. 그리고 제4장 제41조~제46조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과 중국 민법통칙 제122조의 관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인민법원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민법통칙 제122조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제조물품질법 제41조~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sup>11)</sup>

---

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 ① 상품에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 ② 상품이 당연히 구비하여야 할 사용성능을 구비하지 않았으면서도 판매시 설명하지 않은 경우
- ③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명확히 밝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④ 상품 설명, 실물 견본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⑤ 생산국가가 법령으로 도태시킨 상품 또는 판매기한이 지나 변질된 상품인 경우
- ⑥ 판매한 상품 수량이 부족한 경우
- ⑦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이 약정을 위반한 경우
- ⑧ 소비자가 제출한 수리·재제작·교환·반품·상품수량보충·상품대금과 서비스비용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무리하게 거절 하는 경우
- ⑨ 법률·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sup>10)</sup>

10) 蔣飛云, 產品質量 200問,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pp. 9~10.

11) 권오승 외,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p. 164.

## (2) 중국 제조물품질법과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관계

중국의 제조물품질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시장 사업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정상적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12)</sup>

그런데 제조물품질법과 소비자보호법은 규제대상과 적용범위가 중첩된다. 먼저 제조물품질법은 한편에서 제조업자·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함과 동시에 관리자와 제조업자·판매자 사이의 행정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가공·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물에 한정되지만, 생산재료·생활물자를 포함한다. 다만 제1차 농산품과 건설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주로 제조물의 생산·판매활동에 적용된다.

한편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규율한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시장에서의 거래상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소비자가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법률상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이 법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sup>13)</sup> 이 법의 적용대상은 주로 생활용품과 서비스이다.

## 3. 중국 제조물품질법의 특징

중국의 제조물품질법과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단지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한 제조물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만을 명확히 하고,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의 제조물 품질관리 및 국가의 제조물 품질감독 등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물품질법은 제조물책임을 규정하는 외에 품질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의 품질보증방법, 국가의 감독방법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sup>14)</sup> 즉 중국의 제조물품질법은 결합 있는 제조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단순한 민사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제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행정법적인 측면도 포함한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

12) 蔣飛云, 전계서, p. 11.

13) 상계서, p. 12.

14) 상계서, p. 18.

### Ⅲ. 중국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결함

#### 1. 중국 제조물품질법에서의 제조물

##### (1) 중국 제조물품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

중국 제조물품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은 다음과 같다.

##### 1) 가공, 제조를 거쳐 판매되는 것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가공 또는 제조되어 판매에 사용된 제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제조물품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sup>15)</sup>

첫째, 가공·제조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연품(예컨대, 원탄·원광·천연가스·석유 등) 및 초급 농산품(예컨대 가공·제조하지 않은 농업·임업·목축업·어업산품과 수렵물)은 제외된다.

둘째, 판매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제조물과 기타 물품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다. 따라서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제조한 물품은 제조·가공을 거쳤지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품질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에 속하지 않는다.<sup>16)</sup>

(제조물 여부에 관한 사례)<sup>17)</sup>

중학생 이 아무개가 갑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갑 병원 혈액원이 공급한 신선한 혈액 300밀리리터를 수혈하였다. 당해 혈액은 모 현(縣) 인민병원 혈액은행이 당해 현 농민 오 아무개로부터 채취한 것이다. 수술전 갑 병원은 이 아무개에게 A형, B형 간염 및 혈액형 검사만 실시하고 C형 간염 항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10일 후 갑 병원이 이 아무개의 상처를 재검사할 때, 보

15) 張慶 의, 產品質量責任---法律風險與對策, 北京, 法律出版社, 2005, p. 3

16) 中國法制出版社 編, 產品質量案件,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6, p. 240 참조.

17) 蔣飛云, 전게서, pp. 29~30.

호자가 의사에게 이 아무개가 퇴원 후 식욕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고 하자 병원은 당일 즉시 이 아무개의 혈액을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미 이 아무개가 C형 간염에 걸린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 현지 법원에 제소하여 의료비, 영양비 및 이후 치료비 등 7만위안(元)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는 혈액이 제조물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혈액은 일정한 가공단계를 거쳐 원재료 또는 반제품 형태로 바뀐 다음 판매가 된다. 판매하는 것은 제조물을 가공·제조한 목적이 제조업자나 가공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의 가공·제조 목적은 판매하는 것이며, 판매하기 위해 가공·제조하지 않은 물품은 제조물품질법상의 제조물이 아니지만, 혈액은 유통영역에 진입한 제조물에 속한다.

## 2) 가공·제조를 거쳐 판매되는 건축재료, 건축물 부속품과 설비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2조는 “건설공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건축물 부속품(配件)과 설비는 전항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기 전 건축재료, 건축물 부속품과 설비는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타 공산품과 속성이 동일하므로, 가공·제조를 거쳐 판매되는 건축재료, 건축물 부속품과 설비는 제조물품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물에 속한다.

## 3) 중국 국경내에서 판매되는 중국 제조물품질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에 속하는 수입제조물

이 밖에도 약품·식품·계량기구 등의 특수제조물도 제조물품질법상의 제조물에 속한다. 다만 제조물품질법과 중국의 약품관리법·식품위생법·계량법이 서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당연히 약품관리법·식품위생법·계량법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제조물품질법은 일반법이고 약품관리법·식품위생법·계량법은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이다.<sup>18)</sup>



## (2) 중국 제조물품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조물

다음과 같은 것은 제조물품질법상의 제조물에 속하지 않는다.

### 1) 건설공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2조는 “건설공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와 일반 제조물의 품질관리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건설공사에 제조물품질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sup>19)</sup> 따라서 건설공사는 제조물품질법이 규정하는 제조물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른 법률, 즉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1997년 11월 1일 제정)의 규제를 받는다. 다만, 예컨대 강재·시멘트·유리·창문·전기기구와 같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부동산과 혼합되기 전에는 여전히 제조물에 속한다.<sup>20)</sup>

### 2) 1차 농산품

제조물품질법상의 제조물은 가공, 제조라는 노동을 거쳐 판매하는 제조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재배업·목축업·어업 등의 초급 농산품, 수렵품과 원시광산품 등 가공·제조를 거치지 않은 것은 비록 판매 할 수는 있지만 제조물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으므로 제조물품질법의 제조물에 속하지 않는다.<sup>21)</sup>

다수국가의 입법에서 초급 농산품을 제조물책임법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농산품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발생된 잠재적 결함을 확실하게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농산품은 명확히 통일된 품질표준이 없기 때문이다.<sup>22)</sup>

### 3) 군수품

군수품은 무기, 탄약 및 그 부대 제품으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시장

---

18) 상계서, pp. 30~31.

19)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계서, p. 4.

20) 蔣飛云, 전계서, p. 31.

21)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계서, p. 240 참조.

22) 張慶 외, 전계서, p. 4.

에서 판매되지 않으므로 제조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73조는 “군수공산품의 품질감독관리규칙은 국무원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 제조물품질법상의 제조물도 다른 대다수 국가의 법률상 제조물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① 제조물은 일반적으로 동산을 가리키고 ② 초급농산품은 제조물책임법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또 ③ 제조물은 일반적으로 유형물품을 가리킨다.

## 2.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상품

상품은 교환되는 제조물이므로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의 상품과 제조물품질법에서의 제조물의 범위는 당연히 일치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2조는 “소비자가 생활소비를 위해 필요하여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권익은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법 제3조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타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소비객체는 상품과 서비스인데, 이들 중 상품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일상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가리키며, 빵과 같은 완성품, 밀가루와 같은 반제품, 밀과 같은 원료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과일통조림과 같은 제도가공품일 수도 있고, 과일과 같이 천연적으로 자란 것일 수도 있다. 또 이들 물품은 냉장고와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가옥과 같은 부동산일 수도 있다.<sup>23)</sup>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물품질법과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 범위는 다르다. 예컨대 가옥은 부동산이므로 제조물품질법의 규제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제는 받는다.

요컨대,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서비스, 가공하지 않은 농림수산물, 부동산

---

23) 黃建中, 전계서, p. 5.

산에도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기업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24)</sup>

### 3. 중국 제조물품질법에서의 결함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이다.<sup>25)</sup> 즉 제조물책임에 있어 책임요건은 고의, 과실에 상관없이 제조물의 결함 존재 여부에 따른 배상책임이므로 “결함”은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개념인 것이다.

#### (1) 결함의 판단기준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결함이란 제조물에 신체와 타인의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물에 신체건강과 인신·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업계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결함(defect)에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있다. 하나는 제조물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위험”이고, 또 하나는 제조물이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 1) 불합리한 위험의 존재

제조물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위험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이며, 이것은 미국의 제2차 불법행위법 제402조 A [Restatement(Second) of Torts §402 A] 에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위험”(unreasonably dangerous)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sup>26)</sup> 불합리한 위험은

---

24) 新堀聰, 實踐 貿易取引,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8, p. 314.

25) David G. Owen & Jerry J. Phillips, Products Liability(7th ed.),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2005, p. 170.

26) 402조 A(1)항은 결함을 사용자와 고객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것 (...any product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에 존재하는 명백한 또는 잠재적인, 그리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험이며, 이러한 위험은 일단 발생하면 소비자의 신체안전·재산안전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불합리한 위험과 대칭되는 것은 합리적 위험, 즉 제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위험성이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소비자의 안전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예를 들면 뇌관 자체는 일정한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sup>27)</sup> 그러나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면으로 만든 이불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이 질식, 사망할 수 있고, “임산부 복용금지” 문구가 있는 약품을 임산부가 복용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합리적인 위험에 속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위험제품과 결함제품은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흡연은 인체건강에 해를 미치므로 담배는 일종의 위험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결함제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2) 강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강행기준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다. 신체 건강, 인신과 재산안전에 관련되는 국가기준과 업계기준은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강행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은 제조물의 안전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이며,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당해 제조물은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sup>29)</sup> 국가기준은 국가가 신체건강과 인신·재산의 안전과 관련되는 제조물 품질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업계기준은 국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업계의 통일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 국무원의 관련 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기준을 가리킨다. 따라서 국가기준은 업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와 제조물이 국가 또는 업계의 강행기준에 부합하느냐의 여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완전히

27) 蔣飛云, 전게서, pp. 229~230.

28)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게서, p. 238 참조.

29) *Ibid.*

동일할 수는 없다. 제조물의 결함형태는 다양하기 때문에 강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조물이 결함 있는 제조물일 수 있다. 그러나 강행기준에 부합하는 제조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결함이 없는 제조물일 수는 없고, 또 반드시 당해 제조물이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만약 당해 강행기준에 부합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인적·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조업자가 강행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결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만약 제조업자의 면책이 인정된다면 소비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남는다.<sup>30)</sup>

(결함 유무에 관한 사례)<sup>31)</sup>

2000년 4월 8일 소비자 유 아무개가 A 상가에서 “滑順”이란 상표의 샴푸 1병을 사서 당일 사용하였는데 사용당시 부주의로 일정량의 샴푸가 눈에 들어갔다. 그런데 당시는 단지 눈이 약간 아프다고 느꼈을 뿐이므로 평상시 경험에 따라 유 아무개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오후 내내 계속 눈이 편치 않고, 나중에는 실제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유 아무개는 실명하게 되었다. 그동안 치료비로 1만 위안 이상을 소비하였다. 시소비자협회(市消協)는 신고를 받은 이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나머지 샴푸를 관련 부서에 보내 감정을 한 바, 샴푸의 품질도 불합격이고, 또 각 성분의 비율이 국가의 강행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에서 당해 샴푸는 국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관련 기관은 비교적 쉽게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감정하였다.

### 3)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물의 하자

30) 권오승 외, 전개서, p. 170.

31) 蔣飛云, 전개서, pp. 230~231.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의 하자과 다른 개념이다.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에 신체와 타인의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제조물에 신체건강과 인신·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업계기준이 있는 경우 당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제조물의 하자는 제조물이 양호한 특징과 특성을 구비하지 않거나 명시적으로 채용한 제조물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견본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제조물에 인신·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제조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용가치를 상실하지 않은 것이다.

## (2) 결함의 종류

중국의 제조물품질법에서는 결함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은 미국의 제조물책임이론을 참조하여 결함을 보통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과 지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있다.

### 1)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s)은 제조물설계상 존재하는 불안전·불합리한 요구를 가리킨다. 생산은 설계와 분리할 수 없고 개개의 제조물은 모두 설계를 거쳐 생산된다. 따라서 만약 설계상 결함이 존재하면 개별 제조물에 신체,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전체 생산라인상의 제조물 모두에 결함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성가신 문제의 대부분은 결함 있는 제조물의 설계를 포함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설계상의 결함이란 개념이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다.<sup>33)</sup>

---

32) Mark A. Geistfeld, *Principles of Products Liability*, New York, Foundation Press, 2006, p. 85.

33) David G. Owen & Jerry J. Phillips, *op.cit.*, p. 217.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된 사례)<sup>34)</sup>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된 사례로서는 2000년 5월 중국 湖南省 株洲市에 있는 어린이의 낙원에서 발생한 승강기(crane hoist)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에 의하면 수십명의 아동이 승강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도중 갑자기 승강기 연결고리가 끊어져 십여 명의 아동이 공중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다친 아동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조치를 받았는데 다행히 공중에서 지면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아동 사망의 참극은 생기지 않았지만 아동들의 치료비용이 9.875만 위안에 이르렀다. 이것은 제조물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인해 생긴 사고로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설계상의 결함으로 필요한 안전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빚어냈으므로 제조업자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flaws; manufacturing defects)은 제조물책임 클레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sup>35)</sup> 제조물의 가공·제작·조립 등의 제조과정에서 설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가공 공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제조물에 불안정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설계와 달라졌을 때 발생한다.<sup>36)</sup> 설계상의 결함과 달리 제조물 제조상의 결함은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제조업자와 그 밖의 공급자는 그들이 판매한 제조물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조상의 결함과 관련된 사례)<sup>37)</sup>

2001년 3월 15일 소비자 용(龍) 아무개는 슈퍼마켓에서 밀가루 한 포대를 사 밀가루음식을 만들어 식구들이 먹도록 했는데 집식구들이 매우 맛있게 먹었으므로 이때부터 장기간 그 슈퍼마켓에서 밀가루를 샀다. 그런데 2001년 7월 4일 모든 식구들이 머리가 어지럽고, 두통·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진찰결과 만성 중독으로 판명되었고, 독의 근원은 그 식용 밀가루에 있었

34) 蔣飛云, 전계서, p. 231.

35) David G. Owen & Jerry J. *op.cit.*, p. 202.

36) Mark A. Geistfeld, *op.cit.*, p. 72.

37) 蔣飛云, 전계서, p. 232.

다. 유관 부서의 감정 결과 밀가루에 여러 가지 공업용 표백제가 함유되어 있었고 사람이 이를 복용하면 만성중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유 아무개 일가의 중독 원인이었다. 유 아무개는 치료를 받은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 제조공장이 전체 식구들의 의료비와 간호비, 영양비 합계 5,048.5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밀가루의 제조과정에 결함이 존재하였으므로 제조공장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 3) 지시상의 결함

지시상의 결함(failure to warn; warning defects)은 제조업자가 주의 표시나 설명을 하지 않아 그 제조물의 사용, 저장과 운송 등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험을 지니게 된 것을 말하며 「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특정 제조물의 설계나 제조상 문제가 없어 제조물의 유형적인 결함은 없지만 만약 정보전달과정에서 설명·지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조물은 불합리한 위험을 지닐 수 있다.

제조업자와 그 밖의 매도인은 소비자에게 제조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제조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sup>38)</sup> 사업자가 만약 제조물에 주의표시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제조물사용자에게 정확한 사용방법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제조물의 관련위험을 예방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다면 제조물품질법의 주의표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사용기한이 있는 제조물의 경우 잘 보이는 곳에 생산일자과 안전사용기한<sup>39)</sup> 또는 유효기한<sup>40)</sup>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5호는 “사용을 잘못하면 제조물 자체의 훼손 또는 인신,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기 쉬운 제조물의 경우 경고표시 또는 중국어로 된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포장하지 않은 식품과 기타 제조

---

38) David G. Owen & Jerry J. *op.cit.*, p. 257.

39) 안전사용기한은 제조물의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을 보증하는 기간으로서 인체의 건강, 인신, 재산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기한을 말하며, 품질보증기간이라고도 한다(蔣飛云, 전제서, p. 189).

40) 유효기한은 제조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특징과 특성을 상실하게 되는 시간의 한계를 가리킨다(蔣飛云, 전제서, p. 190).



물의 특성상 표시를 하기 어려운 무포장 제조물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어로 경고설명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제조물(수입제조물 포함)은 법에 의거 제조물의 제조업자,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sup>41)</sup>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적당한 위치에 눈에 띄는 글자체 또는 표지(標識)로 예컨대 “복용금지”, “고압위험” 등과 같은 특정 사항의 주의표시를 한다. 만약 이와같은 적당한 주의표시와 설명이 없고 그 결과 제조물의 소비, 사용과정 중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손해를 초래한 경우, 제조물에 지시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만약 소비자, 사용자가 주의표시와 설명을 무시하고 설명된 용도, 제조물 사용방법에 따르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는 고지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제조물에 지시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sup>42)</sup>

이 밖에도 또 하나의 결함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기술이 아직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은 제조물을 유통시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는 발견하기 어렵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제조물결함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을 가리킨다.<sup>43)</sup> 이러한 결함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이에 대해 제조업자가 면책된다.<sup>44)</sup>

41) 중국 국가 품질기술감독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제조물품질법」 실시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 [國家質量技術監督局關於實施〈中華人民共和國產品質量法〉若干問題的意見] (2001년 3월 19일) 참조.

42) 蔣飛云, 전계서, p. 233.

43) 中國法制出版社 編, 전계서, p. 238

44)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1조 제2항 참조.

## IV. 중국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제조물결합의 비교

### 1. 제조물의 범위

중국 제조물 품질법상 제조물은 가공 또는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조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건설공사는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공·제조를 거쳐 판매되는 건축재료, 건축물부속품과 설비는 제조물에 포함된다.

한편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서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99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에 해당하는 한 완성품·부품·원재료·신제품·중고품·재생품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포함된다.<sup>45)</sup>

그리고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거나 그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하며, “제조”는 제조물의 설계, 제작, 검사 표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행위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서비스 등 일련의 용역을 제외한다. 따라서 아파트·빌딩·교량 등의 부동산과 제조·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미가공된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 1차적 자연산물 및 소프트웨어·정보 등 지적 재산물은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배관시설·공조시설·승강기·창호 등은 동산으로서 제조물에 포함된다.

이들 규정을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 제조물 책임을 지는 제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 가공 또는 제조된 것, ② 판매된 것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이기만 하

---

45) <http://www.samsungfire.com/mall/business/pl/images/info7.pdf>(삼성화재, 제조물책임법 해설)에서 2007.4.25 발췌,

면 제조물 책임법상의 제조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동산으로만 한정시켜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동산만으로 한정한다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건설공사로 인한 완성물, 즉 부동산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결론은 우리와 동일하다.<sup>46)</sup>

또 가공하지 않은 1차 농산물도 우리나라나 중국 모두 제조물에서 제외된다.

한편 우리 민법은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동산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민법이 예시하고 있는 전기를 비롯하여 열이나 냉기와 같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도 제조물에 포함된다.<sup>47)</sup> 전기제조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인가된 전압보다 고압의 전기가 송전되어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비자가 예견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전압의 전기가 가정으로 인입되어 사용하던 전기제품의 단락이 발생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sup>48)</sup> 그런데 중국의 제조물품질법에서는 “전기”를 제조물에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전기와 같은 무형물은 이미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하나이며, 동시에 생활 중 전력공급의 부족 또는 초과로 소비자의 인신 및 재산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전력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제조하여 유통에 투입한 전기는 제조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sup>49)</sup>

이 밖에 특히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서비스, 가공하지 않은 농림수산물, 부동산에도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기업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2. 결함의 정의

중국 제조물 품질법상 결함은 제조물에 신체와 타인의 재산안전을 위협하

46) 강동근·윤종성, 제조물책임법, 가람M&B, 2002, p. 87.

47) 권오승 외, 전계서, p. 189.

48) 최승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의 확정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제315호, 2002, pp. 49~50.

49) 張慶 외, 전계서, p. 4 참조.

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제조물에 신체건강과 인신,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준, 업계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강행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sup>50)</sup>

한편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다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 규정을 비교해 보면 우선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결함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물품 질법에서는 결함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자들이 미국의 책임이론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과 중국 제조물품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의 정의를 비교해 보면 결함의 판단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안전성이란 당해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위험과 관련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sup>51)</sup> 그리고 안전성의 정도는 절대적인 안전성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이다.

50) 중국 제조물품질법 제46조 참조.

51) 권오승 외, 전계서, p. 192.

한편 중국의 제조물품질법에서는 결함의 판단기준이 ① 불합리한 위험의 존재, ② 국가기준, 업계기준과 같은 강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이 중 ①의 기준은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상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중국에서는 강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준에 따른 경우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결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다만 당해 제조업계의 통일적 기준이나 자체기준은 강제력이 있는 법령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sup>52)</sup> 따라서 업계기준에 따른 것과 결함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기준에 부합해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함의 정의는 중국과 차이가 있다.

## V. 결 론

최근 한중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조물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될 위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제조물책임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결함 없는 제조물을 제조·수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조물의 결함”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의 제조물의 결함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결함과 우

52) 강동근·윤종성, 전계서, p. 180.

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결함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제조물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이기만 하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이 될 수 있지만, 중국에서 제조물 책임을 지는 제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① 가공 또는 제조된 것, ② 판매된 것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서비스, 가공하지 않은 농림수산물, 부동산에도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도 기업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결함의 판단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제조물품질법에서는 결함의 판단기준이 ① 불합리한 위험의 존재, ② 국가기준, 업계기준과 같은 강행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이 중 ①의 기준은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고 ②에 있는 국가기준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에서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기준에 부합해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제조·유통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제조물책임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제조물에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제조물이 강행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안전한 수출품을 설계·제조하고, 또 제조물의 사용자·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취급설명서나 경고표시를 제조물에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어로 경고설명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제조물책임관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아무리 만반의 대책을 수립했다고 해도 여전히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제조물책임보험에도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 參 考 文 獻

- 강동근·윤종성, 제조물책임법, 가람M&B, 2002.
-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 최승재,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의 확정에 관하여”, 인권과 정의 제315호, 2002.
- 허재창, “한국제조물책임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제17권 제3호, 2002.
- 허재창·한낙현, “중국의 제조물책임관련법규와 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25권, 2005.2
- 董齊超, 產品質量法一本通,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5.
- 法律出版社 編, 消費者權益保護法律手冊, 北京, 法律出版社, 2002.
- 新堀聰, 實踐 貿易取引,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1998.
- 尹芳 編, 產品質量法配套規定,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4.
- 張慶·劉寧·喬棟, 產品質量責任---法律風險與對策, 北京, 法律出版社, 2005.
- 蔣飛云, 產品質量 200問,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 鄭遠民·李志春·朱紅梅·唐海清, 產品質量事故認定與法律處理,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 中國法制出版社 編, 產品質量案件, 北京, 中國法制出版社, 2006.
- 黃建中, 消費者權益保護法新釋與例解, 北京, 同心出版社, 2001.
- Geistfeld, Mark A., Principles of Products Liability, New York, Foundation Press, 2006.
- Owen, D.G., & Phillips, J.J., Products Liability, 7th ed.,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2005.
- <http://www.samsungfire.com/mall/business/pl/images/info7.pdf>

## ABSTRACT

### The Product Defectiveness to Products Liability Claims in China

Lee, Shie Hwan

Product liability law lies at the center of the modern world. This law concerns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commercial sale of a product that causes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because it was defective or falsely represented. One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or otherwise distributing products who sells or distributes a defective product is subject to liability for harm to persons or property caused by the defect. In short, product defectiveness is the heart of products liability law.

Regardless of the underlying cause of action, the plaintiff in nearly every products liability case must prove that the defendant's product contained an unnecessary hazard that caused the har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product defectiveness to products liability claims in China. In China, Product to include most movable personal property, but to exclude services. And a product is defective when, at the time of sale or distribution, it contains a manufacturing defect, is defective in design, or is defective because of inadequate instructions or warnings.

|  |
|--|
| Key words: Product Defectiveness , Products Liability in China |
|--|